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5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서울 지하철은 개통 된 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, 내구연한 초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
- 다. 이에,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
기관현황

- ▶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▶ 설립목적 : 지하철 건설·운영(서울지하철 1~8호선) 및 부대사업
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- ▶ 위 치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▶ 조 직
 - 본 사 : 6본부, 9실, 45처 / 현 업 : 1부문, 2원, 6단, 58센터, 42사업소
- ▶ 인 원 : 정원 16,742명/현원 16,846명 ('20.4.1.기준)
- ▶ 지원시설 : 해당없음

○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추경 대상 사업 : 지하철 1-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

※ 2020년도 대상기관 주요 출자사업('19.8월 출자동의)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,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, 문화예술철도 조성,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1~4호선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요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율이 높고, 2018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시설이 절반 이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
- 다만, 재투자는 신규 건설 수준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며,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출자금 예산(안)

※ 작성자 :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정인경(☎2133-4335)

붙임

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추경예산(안)

가. 출자금 : 43,023,562천원 *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

나. 대 상 : 1개 사업(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출자금)	'20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	산출근거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43,023,562	24,967,000	18,056,562	- 분기기 등 28개 시설 개선